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25조 1항에 의하여, 내과분과전문의의 수련, 자격인정 및 내과분과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내과분과전문의"란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내과학회가 인정하는 특정 전문분과에서 규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 3 조 (의의)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은 대한내과학회 평생회원으로 해당 분과의 전문의사로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내과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 4 조 (분과)

대한내과학회는 아래와 같이 9개 내과분과 전문 과목과 해당 분과의 전문의를 인정한다.

1. 소화기내과 분과
2. 순환기내과 분과
3. 호흡기내과 분과
4. 내분비-대사내과 분과
5. 신장내과 분과
6. 혈액종양내과 분과
7. 감염내과 분과
8. 알레르기면역내과 분과
9. 관절류마티스내과 분과

제 5 조 (조직)

내과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산하에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한다. 단, 위원회의 임기는 대한내과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1.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1) 위원장: 대한내과학회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이사(이하 분과관리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2) 부위원장 및 간사: 관리위원 중에서 분과관리이사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위원: 분과별로 최소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분과관리이사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4) 관리위원회는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2. 분과위원회

1) 관리위원회 산하에 제4조에 규정한 9개 내과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장: 각 분과별 관리위원이 분과위원회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3)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 분과위원장이 추천, 분과관리이사가 임명하는 12인 이내 위원을 두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과 간사를 각 1인씩 선출한다.
4)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6 조 (수련)

1. 내과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대한내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내과분과전임의 수련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단, 소화기분과의 수련기간은 2년으로 한다(전공의 수련 3년제에 한함).
3.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추가수련 등 부득이한 사유로 3월 1일자로 수련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에도 수련기간은 1년 이상(소화기분과의 경우 2년 이상)으로 하며, 수련 개시 일자와 지연사유를 학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전임의 수련은 연속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역의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속하여 수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6. 수련교육 목적으로 전임의를 파견할 경우 기간과 수련장소를 명기하여 1개월 전에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임의 파견 대상병원이 해당 분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해외 파견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아래 기준을 충족할 때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외 수련병원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
 2) 내과전공의 수련병원 여부
 3) 해당 분과 교육지도자 유무
 4) 적절한 시설 및 장비 구비: 각 분과별 수련병원 지정기준 충족
7. 전임의가 수련기간 중 수련병원을 이동하여 수련할 경우, 이동할 병원이 해당 분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이동할 수련병원에서 이동 수련 1개월 전에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두 개 이상의 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전임의는 1개 분과전문의의 수련과 실무를 마치고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9. 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분과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수련병원)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내과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전문 과목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내과학회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3.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해당 분과별로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따른다.

제 8 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방법
 1) 내과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응시원서)의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각 해당 분과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수험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해 시험을 시행한다.
 2) 내과분과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인정을 무효로 한다.

3)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다.

2. 자격인정 기준
 1)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본회 평생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경력을 갖는 자
 2) 대한내과학회 지정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이수 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단, 소화기분과는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전공의 수련 3년제에 한함.)
 3) 응시원서 접수 시 별표 4(수련내용)를 충족하고, 상기 제2호에 대한 증빙자료로 수련이수증명서와 실무종사 증빙자료(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자
 4) 상기 제 1, 2, 3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자격인정증을 교부한다.
 5) 기타사항은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 9 조 (시험)

1.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은 매 1년마다 시행한다.
2.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 10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년, 월, 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 11 조 (부칙)

1. 본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6조 제3항의 정규수련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3. 개정된 제5조 1항의 1), 2항의 2)와 3), 그리고 기구표는 199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8년 2월 25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3년 11월 25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6년 11월 22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7년 10월 2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0년 3월 10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0년 7월 13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14년 8월 21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0년 2월 27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1년 9월 30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22년 9월 22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24년 6월 11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2025년 9월 19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17. 본 규정은 2026년 9월 18일 개정되어 시행한다.